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88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하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량을 조정하는 한편, 해당 벌칙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제1항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를 "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의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

제170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68조제1항제1호의3, 같은 조 제2항 및 제17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	제168조(벌칙) ①		
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		
	<u>지 아니하였을 때</u>		
<u>1의3</u> . (생 략)	<u>1의4</u> .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	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		
<u>지</u> 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u>4까지, 제2호 및 제3호</u>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제170조(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u><삭 제></u>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3의2. ~ 17. (생략)

3의2. ~ 17. (현행과 같음)